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운영 세부규칙

| | |
|--------|-------------|
| 제정 | 2013.02.15. |
| 일부개정 | 2013.12.05. |
| 개정 | 2015.07.17. |
| 개정(시행) | 2018.06.18. |
| 개정(시행) | 2019.11.01. |
| 개정(시행) | 2022.03.28. |
| 개정(시행) | 2023.12.27. |
| 개정(시행) | 2024.02.14. |
| 개정(시행) | 2025.01.2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제1장 장난감도서관

제1절 총칙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서울장난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3. “대여품”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이용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운영

제4조(운영 목적)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령과 발달수준, 특성에 적합한 장난감을 통해 다양한 놀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및 도서 대여
2. 육아용품·장애아 장난감 대여
3. 장난감 기부 및 수리
4. 그 밖에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으로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은 <표1>과 같이 운영한다.

<표1>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 운영일 | 운영시간 |
|---------|---|
| 화~금 | 10:00 ~ 18:30 |
| 주말(토/일) | 11:00 ~ 17:00 |
| 휴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정부에서 정한 임시 휴일 |

제3절 회원관리

제7조(회원자격)

1. 대상

장난감도서관 회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직장인 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전 연령의 영유아이며, 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2. 회원유형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회원가입)

1. 장난감도서관은 아동명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며 회원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대여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 가입 대상자는 홈페이지 사전 가입 후 서울장난감도서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비서류 확인 및 연회비(10,000원) 납부 후 확정된다.
3. 연회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면제되며, 이는 회원가입 시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여 증명이 되었을 때 적용된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② 장애아동을 둔 가정 또는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⑤ 가정위탁보호 가정
 - ⑥ 다자녀 가정
 - ⑦ 기관회원
4. 면제 대상 확인여부를 위하여 대상유형에 따라 <표2>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2> 회원 대상별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연간 회비 |
|------------|---|---------|
| 서울시 거주 시민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10,000원 |
| 서울시 소재 직장인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 재직증명서 | |
| 서울시 거주 외국인 | 부모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 장애인 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가 장애인 경우: 복지카드 · 아동이 장애인 경우: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 면제 |
| 기초생활수급권자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한부모가족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
| 국가유공자 가정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
| 다문화가족 | 부모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
| 가정위탁 보호 | 위탁가정 부모 신분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 다자녀 가정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
| 기관 회원 | 시설장 신분증, 고유번호증 (제5조 2항, 4항에 따른 사업 참여 기관에 한함) | |

※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취학유예아동은 취학유예통지서 제출

5. 장난감도서관은 가입 대상자가 제시한 구비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인에게 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 ① 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구비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서류 내 아동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삭제하여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삭제한다.

제9조(회원기간)

1. 연회비 유지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회원 대상기간은 회원가입일로부터 영유아가 취학 전 기간(취학유예기간 포함)까지로 한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로 한다.
3. 연회비 면제자도 동일하게 회원 유지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입 시 가입 서류를 재제출하여 확인한다.
4. 기존 회원일 경우 1년 경과 후 연회비 납부 및 가입 서류 재확인 후 연장된다.

제10조(회원탈퇴)

1. 회원탈퇴는 언제나 자의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의에 의해 회원을 탈퇴한 경우 장난감도서관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3. 회원탈퇴 시,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회비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 ①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 100% 환불
 - ②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 50% 환불
 - ③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환불 불가

제4절 대여 서비스

제11조(대여 내용)

장난감도서관 개인회원의 대여 내용은 각 항에 따르며, 제5조 2항, 4항에 따른 기관회원은 운영방법 등에 대해 사업 내 기준으로 별도 적용한다.

1. 장난감과 도서는 각 3점씩 14일 대여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1회 연장(7일)이 가능하여 최대 21일까지 가능하다. 장난감 1점 대여는 도서 3권의 대여로 전환 가능하다. 단, 도서 3권 대여는 장난감 1점 대여로 전환할 수 없다.
2. 육아용품과 장애아장난감은 각 1점씩 1개월 대여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2회 연장(각 1개월)이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대여 기간 연장은 최초 대여 시 1회, 대여 중 추가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장난감은 장애아동(또는 발달 지연 등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승인을 받은 회원만 대여할 수 있다.
3. 백일·돌상은 1점씩 5일 대여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1회 연장(4일)이 가능하여 최대 9일까지 가능하다.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와 서울아이백일돌컷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대여 이용수칙)

1. 회원은 홈페이지 대여 예약 후 직접 수령, 택배 서비스, 시·구연계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장난감을 현장에서 예약 후 대여할 수 있다.
2. 대여 예약 취소 후 3일 동안 동일번호의 대여품 예약이 불가하다. 단, 취소 후 24시

간 이내 재예약 가능하다.

3. 한 번 대여했던 대여품(동일번호)은 3개월 내 동일인이 재대여할 수 없다.
4. 대여품에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반납 시 반드시 보관 봉투(비닐백 또는 타포린 가방)와 함께 반납한다.(보관 봉투 분실 시 요금 대체)

제13조(연체 및 파손, 분실로 인한 배상처리)

1. 대여품 1점당 1일 연체시 2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횟수와 상관없이 연체 누적일수가 30일 이상 되면 반납 후 3개월 대여 정지된다. 90일 이상 연체시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자에게 사실을 고지하며, 120일 이상 되면 회원자격이 소멸된다. 대여품 반납시 점으로부터 1년 후, 서울장난감도서관 재가입이 가능하다.
2. 3회 이상 분실 및 파손한 경우 3개월 대여 정지된다.
3. 대여 후 대여품을 분실·파손한 경우 동일한 대여품으로 대체하거나, 대여품 차등 변상금액 기준<표3>에 따라 변상한다.
※ 단 블록류에 한해 소비자가의 개별 단가로 계산하여 변상 가능하다.

<표3> 대여품 차등 변상금액 기준

| 대여품 대여 횟수 | 변상금액 |
|-------------|------------|
| 1회(새 제품)~3회 | 구매금액의 100% |
| 4회~10회 | 구매금액의 90% |
| 11회~20회 | 구매금액의 80% |
| 21회~30회 | 구매금액의 70% |
| 31회~35회 | 구매금액 60% |
| 35회~50회 | 구매금액의 40% |
| 50회 이상 | 구매금액의 20% |

5. 대여품 수리 시 발생하는 부품 비용에 관련된 실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 가능하다.
6.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택배서비스)

1.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택배 가능 장난감에 대해 택배 서비스 선택 이용이 가능하다.
2. 대여기간은 배송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대여일(14일)+3일로 이루어진다.
3. 택배서비스는 서울내 주소지에 한정하여 배송료는 착불로 이루어진다.
4. 택배가능한 장난감은 최대크기 600*500*450mm에 한정한다.
5. 택배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 ① 택배 후 장난감과 파손, 분실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 택배를 받아본 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장난감도서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장난감도서관 반납 서비스를 이용한 반납은 같은 송장번호를 사용함으로 대여 및 반납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반납 시 개별 택배사 이용 가능)

제15조(시·구장난감도서관 연계통합서비스)

1. 장난감도서관의 모든 대여 물품은 연계통합서비스 선택 이용이 가능하다.
2. 대여기간은 배송도착일부터 산정하며, 대여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3. 연계통합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 ① 수령 후 장난감과 손, 분실 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장난감도서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연계통합서비스 이용 시, 물품을 대여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장난감도서관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서울아이백일돌킷-백일·돌상 촬영공간 대여 서비스)

1. 장난감도서관의 모든 회원은 서울아이백일돌킷 이용이 가능하다.
2. 촬영공간과 기본 상차림 세트, 촬영소품, 촬영용품 등을 제공하며 운영 상의 이유로 대여품이 변경될 수 있다.
3.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한 시간동안 이용 가능하며, 운영 장소는 서울가족플라자 내 ‘서울엄마아빠 VIP존 3호’ 이다.
4.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5. 촬영공간(서울엄마아빠 VIP존 3호) 이용은 「서울가족플라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절 기타 서비스

제17조(장난감 수리)

1. 서울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수리에 필요한 부품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온라인 게시판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수리 접수 및 승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의 경우 수리가 불가하다.
 - ① 타 기관(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대여 업체 등) 물품
 - ② 수리 부품 구입 불가 물품
 - ③ 전자 기관 파손 또는 내부 접촉 물품
 - ④ 그 외 서비스 제공 부적합 물품

제18조(장난감 기부)

1. 서울장난감도서관 회원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을 기부받아 대여품으로 활용한다.
2. 온라인 게시판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대여품 기부 접수 및 승인 후 기부가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 기부를 진행하지 않는다.
 - ① 제품 안정성 미인증 물품(KC 미인증, 해외 직접 구매, 리콜 대상 등)
 - ② 파손 및 부품 분실 물품

③ 형값류 물품

④ 증정용 또는 대여품 활용 부적합 물품

제6절 수입과 지출

제19조(수입과 지출)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장난감도서관의 수입은 1년간 적립한 후 익년에 반납한다.
3. 수입 발생시에는 수입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4. 지출 행위시에는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